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및 특징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2. 간이과세 적용배제

-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2) 재합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를 통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
- (3)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인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4)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적용배제사업)(단,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및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경영 포함)
- ㉡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서비스업과 약사, 한약사, 수의사
- ㉣ 사업장의 소재지·업종·규모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제외)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4.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2절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공급대가)}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10\% (\text{영세율은 } 0\%) + \text{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매입할 때 재고품과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100%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차이부분을 추가적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제도이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구분		계산식
재고품		취득가액 × $\frac{10}{100}$ × (1-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1-업종별 부가가치율)
감가 상각 자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frac{10}{100}$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신축·제작한 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업종별 부가가치율)

2.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이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업 영위 간이과세자에 한함)	$\text{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 매입가액} \times \frac{8}{108} \quad (\text{과세유통장소는 } \frac{4}{104})$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 급세액공제	발행금액 ×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한도 연간 700만원.
(4)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에 대하여 1만원(단, 당해 공제 전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3. 가산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산세의 종류	간이과세자의 가산세액	
(1)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공급대가 × 0.5%	
(2)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1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 40%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미달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 × 기간 × $\frac{3}{10,000}$	
(4)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대가의 0.5%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 납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납부임무 또는 예정고지납부임무가 없고, 확정신고 · 납부임무만 있다.

각 과세기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관 종료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납부임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신규 개업시 6월로 환산한 금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납부임무를 면제한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임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4절 과세유형의 변경과 간이과세 포기

1.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이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3.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일반과세의 적용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시 할 수 있다.

-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③ 사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커진다.